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(5급 26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3일까지에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7월 13일”을 “2027년 7월 13일”로 하고, 같은 부칙 제3조 중 “2025년 7월 13일”을 “2027년 7월 13일”로, “2025년 7월 14일”을 “2027년 7월 14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지 존속하며, <u>2025년 7월 14일</u>	----- <u>2027년 7월 14일</u> -
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	-----
별표 2의 행정주사·사서주사	-----
· 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	-----
사·수의주사·해양수산주사·	-----
기상주사·보건주사·의료기술	-----
주사·약무주사·환경주사·항	-----
공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	-----
또는 방송통신주사 26명으로 분	-----
다.	--.